

인천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2296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나완수, 권세현, 서하원, 이창선

피 고 A(개명 전 이름 : B)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6,159,0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59,0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2. 8. 2. C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D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C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6. 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3. 28. D에 23,158,3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와 C의 혼인관계

- 1) 피고(중국 국적이었다가 귀화)는 2002.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06. 9. 11. 혼인신고를 하였다.
- 2) 피고와 C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016.경부터 불화를 겪던 중, 2017. 하반기경 별거하였다.
- 3) 피고는 2018. 1. 5. C 등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8드단251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28. ‘피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와 C은 이혼하였다.

다. C의 처분행위

C은 2008. 4. 6.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7,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7.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7. 11. 22.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자 고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의 혼인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복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부터 C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직후 C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도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은 점, ② 피고와 C은 2002.경부터 동거하였고 C은 그 혼인기간 중인 2008. 4. 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때까지 피고는 식당, 결혼상담소 등에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후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도 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7.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74,62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F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F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F조합으로 하여 마쳐져 있던 2011. 3.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42,067,084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C의 F조합에 대한 다른 대출금 채무 15,180,752원 또한 상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C의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이 이혼하면서 그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한편 그와 관련한 채무 또한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와 C의 혼인기간은 약 11년 이상이고, 동거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약 15년에 이르는 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한 점, ㉡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식당, 결혼상담소, 마트 등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2,000,000원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C의 채무 57,247,836원(= 42,067,084원 + 15,180,752원)을 제외한 피고의 순 이득액은 34,752,164원(= 92,000,000원 - 57,247,835원)에 그치는 점, ㉣ C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할 무렵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I’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얻고 있었는데(2017년도 수입신고금액 합계 117,484,512원), 이와 관련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한 C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혜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4층

다세대주택

1층 52.17㎡

2층 94.98㎡

3층 94.98㎡

4층 94.98㎡

지하 52.1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2.8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직할시 북구

대 383㎡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1. 383분의 23.18

